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05
----------	-----

2019년 9월 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3.27. 양민규 의원 대표발의(찬성 14명)

나. 회부일자 : 2019.3.29.

다. 상정 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19년 9월 5일 상정·의결(수정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발간되고 있는 “서울의회” 또는 대시민 “홍보영
상물”에 대한 편집위원회를 명문화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의회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3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9조)

○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서울의회 및 영상홍보물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가 제작·배포하고 있는 ‘서울 의회’와 대시민 ‘홍보영상물’의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의회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음.

2 입법형식에 대한 검토

- 현재 의회 편집위원회는 의회 예규(「서울의회 및 영상홍보물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를 근거로 구성·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 세부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음.

<최근 3년간 편집위원회 예산 및 추진실적 등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회)

구분	예산	집행액	추진실적	개최횟수
2017	18,400	10,087	- 제181호~제187호 서울의회 발행계획안 및 가관 편집 심의 - 전광판 영상홍보물 콘텐츠 심의 - 연찬회 개최(상, 하반기 2회) - 제9대 하반기 편집위원회 발전방향 논의 등	6
2018	19,800	6,189	- 제188호~제193호 서울의회 발행계획안 및 가관 편집 심의 - 전광판 영상홍보물 콘텐츠 심의 - 연찬회 개최(상반기 1회) - 제10대 전반기 편집위원회 위촉 등	6
2019. 8월 (현재)	21,000	8,070	- 제194호~ 제196호 서울의회 발행계획안 및 가관 편집 심의 - 전광판 영상홍보물 콘텐츠 심의 - 연찬회 개최(상반기 1회) - 제10대 전반기 편집위원회 발전방향 논의 등	3

※ 편집위원회 예산 및 집행액은 회의 개최를 위한 물품, 수당 및 연찬회 실시 비용을 말함.

- 본 제정안은 의회 예규에 따라 운영되어 온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대외적 효력을 가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그 구성과 운영,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¹⁾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서 입법형식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3 조례제명과 목적조항(안 제1조)

- 제명은 조례의 고유한 이름으로 주요한 규정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하되 알기 쉽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함.
- 그러나 본 제정안의 제명은 ‘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으로 하고 있어 의회의 모든 간행물과 홍보영상물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일부 오해될 소지가 있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더라도 서울의회와 대시민 영상홍보물의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 및 그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제정안의 제명을 보다 함축적이고 알기 쉽게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조례 제명이 일부 수정될 경우에는 안 제1조의 목적조항도 이에 맞게 함께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작하는 간행물 또는 홍보물의 편집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4 편집위원회의 설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의회에서 제작하는 서울의회 및 대시민 영상홍보물의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편집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서울의회와 대시민 영상홍보물만이 해당된다고 할 것임.

제2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작하는 서울의회 및 대시민 영상홍보물의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문리적(文理的) 해석상 서울의회는 매 회기 종료 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의회 의정소식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시민의 입장에서 이를 명확하고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므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의회사무처는 각 부서별로 다양한 영상홍보물을 제작·활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중 편집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영상홍보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조례상 용어 정의가 없어 그 적용대상과 범위를 두고 일부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영상홍보물에 대해서도 명확한 용어의 정의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

5 편집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 안 제3조는 편집위원회의 기능과 심의 대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의회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게재 원고 및 편집시안 심의에 관한 사항
3. 대시민 영상홍보물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편집과 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다만, 편집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서울의회와 대시민 영상홍보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세부 심의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일부 조문의 체계자구에 대한 수정·보완이 요구됨.

6

편집위원회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및 간사와 서기(안 제4조, 제7조 및 제9조)

- 안 제4조는 편집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총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의원 6명, 외부 전문인 4명, 당연직 위원 1명을 의회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에서 6명, 언론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인 4명을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의원과 외부 전문인 각각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그러나 제1항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해 그 구성인원에 있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제2항에는 시의원 6명, 외부전문인 4명, 당연직 1명 등 최대 범위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확정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동일 조항 안에 구성인원에 대한 문구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계적합성 제고를 위해 이를 통일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반적으로 ‘전문인’보다는 ‘전문가’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안 제4조, 제7조의 문구 중 ‘전문인’을 ‘전문가’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안 제9조는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사무관으로, 서기는 홍보담당주무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의 홍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의회사무처 홍보담당주무관이 된다.

- 이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와 효율적인 업무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통상적으로 위원회 업무 처리 또는 지원을 위해 ‘간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외 추가적으로 ‘서기’라는 직책과 업무담당자를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7 편집위원회 회의(안 제8조)

- 안 제9조는 편집위원회의 회의 소집, 의결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회의 소집 시기와 방법 및 절차, 그리고 회의록 작성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제2항의 의결결과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8 수당과 여비(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편집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직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을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심의안건 검토비용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0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심의안건 검토비용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회의 참석 수당과 심의안건 검토 비용 등의 실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여비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별도의 여비를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안 제10조의 제목을 ‘수당 등’으로 수정·보완해 조 제목과 규정내용의 체계적합성에 맞게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9

한글 맞춤법 및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 등에 체계자구 검토(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의 일부 조문은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체계자구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0 종합 의견

- 본 제정안은 의회 예규에 따라 서울의회와 대시민 영상홍보물의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오던 편집위원회를 대외적 효력을 가진 조례에 그 근거를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의회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는 등 그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제명의 구체화, 편집위원회 심의 대상인 서울의회와 대시민 영상홍보물의 정의조항 신설, 편집위원회 심의 대상의 명확화와 구성 인원에 관한 동일 조항 내 불일치 해소, 편집위원회 회의 소집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체계의 적합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한글 맞춤법,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부 조문의 체계자구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 제명을 보다 함축적이고 알기 쉽게 조정하고 이에 맞춰 목적 조항을 수정하는 한편, 편집위원회의 적용범위와 기능, 회의

운영 등에 관해 법적통일성과 명확성 제고를 위해 용어 정의, 준용규정의 신설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나. 수정의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함.
- 용어의 정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 편집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함(안 제5조).
-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준용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체계자구를 정비함(안 제3조~제10조).

7.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505 관련
----------	-----------

제안년월일 : 2019년 9월 5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 제명을 보다 함축적이고 알기 쉽게 조정하고 이에 맞춰 목적 조항을 수정하는 한편, 편집위원회의 적용범위와 기능, 회의 운영 등에 관해 법적통일성과 명확성 제고를 위해 용어 정의, 준용 규정의 신설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함.
- 용어의 정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 편집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함(안 제5조).
-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준용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체계자구를 정비함(안 제3조~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서울의회 및 영상홍보물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의회”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기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 정활동 소개, 시민들에게 유익한 각종 생활정보 등을 전달하는 데 시민 홍보소식지를 말한다.
2. “영상홍보물”이란 의회 영상광고, 전광판용 영상물 및 그 밖에 홍보영상을 말한다.

안 제3조(종전의 제2조) 중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작하는”을 “의회가 제작·배포하는”으로, “서울특별시의회편집위원회”를 “의회 편집위원회”로 한다.

안 제4조(종전의 제3조)제2호 중 “게재”를 “서울의회 게재”로, “편집시

안 심의”를 “편집시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심의”를 “제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울의회 및 대시민 영상홍보물 제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5조(중전의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에서 6명”을 “의원 중에서 6명 이내”로, “전문인 4명을”을 “전문가 4명 이내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인”을 “전문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사무관이 된다.

안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후단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안 제7조(중전의 제6조)제2항 중 “전문인”을 “전문가”로 한다.

안 제8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위촉 해제를”을 “해촉을”로 한다.

안 제9조(중전의 제8조)제3항 중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제2항의 의결결과 가부동수일 때에는”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으로 한다.

안 제10조의 제목 “수당과 여비”를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안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준용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u>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u>	<u>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u> <u>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u> <u>조례안</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 <u>시의회에서 제작하는 간행물 또</u> <u>는 홍보물의 편집과 위원회의</u> <u>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u> <u>적으로 한다.</u></p> <p><u><신 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 <u>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의 구</u> <u>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u> <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u>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의회”란 서울특별시의 <u>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기</u> <u>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 및 서</u> <u>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u> <u>원”이라 한다) 의정활동 소개,</u> <u>시민들에게 유익한 각종 생활</u> <u>정보 등을 전달하는 대시민</u> <u>홍보소식지를 말한다.</u> 2. “영상홍보물”이란 의회 영상 <u>광고, 전광판용 영상물 및 그</u> <u>밖에 홍보영상을 말한다.</u>
<p>제2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서울특</p>	<p>제3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의회가</p>

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의원
과 외부 전문인 각각 1명을 위
원회에서 호선한다.

<신 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
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
략)

②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원인 부위원
장과 외부 전문인 부위원장 순
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
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출석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원인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 전문가 -----
-----.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
되, 간사는 홍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임기) ① -----
-----.

----- 다만, -----
-----.

②·③ (원안과 같음)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원안
과 같음)

② -----

----- 전문가 -----

제8조(위원의 해촉) -----

해촉-----.

1. ----- 해촉을 -----

희망한 경우

2. ~ 7. (생략)

제8조(회의)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제2항의 의결결과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의 홍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의회사무처 홍보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

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심의안건 검토비용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11조(생략)

2. ~ 7. (원안과 같음)

제9조(회의) ①·② (원안과 같음)

③ -----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

<삭제>

제10조(수당 등) -----

----- 범
위-----

-----.

제11조(준용규정) 위원회의 운영

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원안 제11조와 같음)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의회”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기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 소개, 시민들에게 유익한 각종 생활정보 등을 전달하는 대시민 홍보소식지를 말한다.
2. “영상홍보물”이란 의회 영상광고, 전광판용 영상물 및 그 밖에 홍보영상을 말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의회가 제작·배포하는 서울의회 및 대시민 영상홍보물의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의회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서울의회 게재 원고 및 편집시안에 관한 사항
3. 대시민 영상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울의회 및 대시민 영상홍보물 제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의원 중에서 6명 이내, 언론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 4명 이내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의원과 외부 전문가 각각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의원인 위원의 의원직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원인 부위원장과 외부 전문가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의원인 위원의 의원직이 상실되는 경우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심의안건 검토비용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준용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